



비과세 종합저축 약관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비과세 종합저축 (이하 '저축'이라 한다)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'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', 우체국이 취급하는 각종 예금, 환매조건부채권 등(이하 '예금 등'이라 한다)의 약관(특약 포함)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 【가입대상자】

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(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2.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3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
5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6.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



를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7.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

제3조 【대상 예금 등】

우체국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중인 비과세 예금 등은 제외한다.

제4조 【예치한도】

- ① 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금 등 계좌의 예치한도는 원금을 합하여 5천만원(단,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)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이 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최종이자원가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한도에 포함한다.
- 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이 저축의 한도로 정할 수 없다.

제5조 【예치한도 산정】

- ①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한다.
- ② 정액(정기)적립식 예금 등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- ③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,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예금 등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.

제6조 【예치한도 변경】

이 저축의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우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7조 【비과세처리】

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.

제8조 【표시방법】

이 저축 가입자는 신규가입시 ‘비과세 종합저축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통장의 표지 내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‘비과세 종합저축’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제9조 【적용이율】

이 저축으로 가입한 각 예금 등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0조 【상속에 의한 특별중도해지】

저축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, 상속인은 우체국에 이 저축의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, 이때 우체국은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한다.

제11조 【저축의 전환여부】

이 저축과 이 저축이 아닌 예금 등은 상호 전환할 수 없다.

제12조 【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】

제11조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하여 가입한 때는 거래처가 이 저축으로 선택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계좌로 전환하여야 한다.

제13조 【명의변경 등】

명의변경 및 양수·양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.

제14조 【예치한도 초과 입금제한에 따른 책임】

예치한도 초과로 입금(무통장입금 및 타행환송금 포함)이 되지 않아 수표의 지급결제 불가,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,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5조 【비과세 종합저축 자료의 정보제공】

- ① 비과세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고객별 비과세종합저축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의

계약금액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- ② 금융기관은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(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)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(수익자 포함)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가입자는 기존특약을 적용받는다.